

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

존경하는 이은림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!

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,

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.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직원들의 안전한 직

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.

이에 본 조례안은

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와 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)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.

“직장 내 괴롭힘”, “직장”, “직원”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, 의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상담과 예방교육을 진행토록 했습니다. 또한,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해야하는 조치와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했습니다. 해당 조사와 이에 협력하는 인원에 대한 불이익의 조치를 금하도록 했습니다.

아무쪼록 직원들의 안전과 보호를 생각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!